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(채현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20

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채현일·박상혁·김기표

이광희 · 서미화 · 김남희

조인철 · 김남근 · 이훈기

염태영 • 박홍배 • 김현정

조 국・박민규・이기헌

박해철 • 전진숙 • 부승찬

박지혜 • 박정현 • 이재관

박희승 • 박용갑 • 최민희

황정아 · 장종태 · 김영환

문금주 • 윤건영 • 양부남

정진욱 • 박지원 의원

(329]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차량의 급발진 사고 등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부여하면서 피해자가 결함 및 손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입증만으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제조물 특성상 대부분의 증거가 제조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여전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서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 을 겪고 있습니다.

소송 과정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「민사소송법」은 상대방 또는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법원의 소극적 운용,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

이에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「민사소송법」에 규정된 문서제출명령보다 강화된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하여, 불이행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 며, 고의나 과실로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게 되면 법원이 실기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. 아울러 자료제출을 통한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 으로써 종국적으로는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시정・보완하고 증 거수집권이 균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.

주요내용

가.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, 결함·손해의 증명 등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

부할 수 없도록 하며, 제출명령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훼손하는 등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신청인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, 이 경우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의2 신설).

- 나. 당사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제출되어야 할 자료를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의3 신설).
- 다.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그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상대방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있도록 함(안 제7조의4부터 제7조의6까지 신설).

법률 제 호

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조물 책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부터 제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조의2(자료의 제출)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결함의 증명,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나결함·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. 이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.

- ④ 법원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1.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- 2. 자료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 의무 가 있는 자료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
- 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, 해당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제7조의3(자료제출명령을 위반한 공격·방어방법의 각하) 법원은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그 제출되어야 할자료를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각하할 수 있다.
- 제7조의4(비밀유지명령)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), 당사자를 위하여소송을 대리하는 자,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

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),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,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,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 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
- 2.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
-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(이하 "비밀유지명령"이라 한다)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- 1.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
- 2.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
- 3.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
-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-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-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- 제7조의5(비밀유지명령의 취소)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(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법원을 말한다)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 -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 -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.
 -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.
- 제7조의6(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)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 진 소송(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)에 관한 소송 기록에 대하여 「민사소송법」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

에,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, 법원사무관,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(이하 이 조에서 "법원사무관등"이라 한다)는 같은 항의신청을 한 당사자(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. 이하 제3항에서 같다)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-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(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)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「민사소송법」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아니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제출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) 제7조

의2부터 제7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손해 배상청구소송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/u>	제7조의2(자료의 제출) ① 법원은
	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
	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
	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결함
	의 증명, 해당 손해의 증명 또
	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
	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 다
	만,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
	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
	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	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
	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
	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
	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
	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
	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. 이
	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
	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
	<u>다.</u>
	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되
	어야 할 자료가 「부정경쟁방
	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
	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

비밀에 해당하나 결함·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. 이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.

- ④ 법원은 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 1.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
- 2. 자료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 의무가 있는 자료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경우

경우

5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 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<신 설>

<신 <u>설></u>

곤란한 사정이 있고, 해당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그 당사자가 자료의기재에 의하여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7조의3(자료제출명령을 위반한 공격・방어방법의 각하) 법원은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그 제출되어야 할 자료를 되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각하할수 있다.

제7조의4(비밀유지명령)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제기된 손해 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가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

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),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 을 대리하는 자, 그 밖에 그 소 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 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 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),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,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 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 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 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 야 할 준비서면, 이미 조사하 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라

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

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

있다는 것

- 2.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
-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(이하 "비밀유지명령"이라 한다)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- 1.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
- 2.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 한 사실
- 3.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 하는 사실
-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-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 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

<신 설>

발생한다.

-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 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하 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- 제7조의5(비밀유지명령의 취소)
 -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(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법원을 말한다)에 비밀유지명령을 려린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 -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 고를 할 수 있다.
 -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 생한다.

<신 설>

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 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 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. 제7조의6(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 구 통지 등) ① 비밀유지명령 이 내려진 소송(모든 비밀유지 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 다)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「민사소송법」 제163조제1항 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, 당사 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 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 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 는 법원서기관, 법원사무관, 법 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(이하 이 조에서 "법원사무관등"이라 한다)는 같은 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(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. 이하 제3항

- 에서 같다)에게 그 청구 직후 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 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.
-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지날 때까지(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)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「민사소송법」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